

「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 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0.22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4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43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녹지공원과장 허형형)

가. 제안이유

- 법령의 개·폐 등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·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에 맞게 정비
 -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⇒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
 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6조
 - ⇒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
 -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⇒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

다. 법적근거

- 도시공원법 및 같은법시행령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- 건축법시행령
-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(안)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명칭·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- 조례 조문상의 관계법령의 인용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
 - 도시계획법이 2002. 2. 4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. 2. 4(법률 제6655호) 자로 제정공포 되어 2003. 1. 1부터 시행되고
 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2002. 12. 30자로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2002. 12. 30(건설교통부령 제343호)자로 제정공포 되어 2003. 1.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
 -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1999. 6. 30 개정되어
- 동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법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